

## 2025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

### 2025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(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) 안내

안녕하세요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: 신청자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혹은 온라인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에서 신청

#### ■ 지원대상 및 자격

##### ○ 컴퓨터 지원

- (대상) 초등학교 1학년~6학년, 중학교 1학년~3학년, 고등학교 1학년
- (지원자격)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(선정방법) 1순위-PC 미보유자 및 2015년 이전 학부모 자체구입 PC보유자, 2순위-PC 노후화[2016~2020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(노트북 포함)] 중 예산 범위 내 지원
  - ※ 동 순위인 경우 학생자격(생계>의료>주거>교육>한부모), 고학년,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
- (신청방법) 2025. 6~7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
- (지원제외) 교육청(타 시도 교육청 포함) 및 지방자치단체(모든 공공기관),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, 동일 가구의 형제·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(1가구 1PC, 1회만 지원)

##### ○ 인터넷 사용료 지원(1년간 사용료 대납)

- 대상: 초등학교 1학년~6학년, 중학교 1학년~3학년, 고등학교 1학년~3학년
- 지원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
- 선정(최연소자 우선) 및 신청: 2025. 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(기존지원자는 계속지원·승계,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)
  - \* 교육부·교육청·통신사 간 협약 통신사의 지원 가능 요금제(월 17,600원) 가입 필수
- 지원제외: 지원거부자, 결합 무료할인, 지원불가 상품가입자,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,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

#### ■ 지원 시기

- 컴퓨터 지원: 8~9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(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)
- 인터넷사용료지원: 2025. 7 ~ 2026. 6월 사용분
  - ※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: 매년 11월1일~20일(연 1회 한정)
  - \* 변경 가입 후, 해지를 늦게 할 경우 ⇒ 월 17,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

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초1~고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. 전년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'25년 가구·학생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2025. 6. 12.

전주동중학교(직인생략)

#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

## 1. 컴퓨터 지원

-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/S(1년)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.
  -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기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
-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 상실(졸업, 자퇴, 퇴학 등)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.
-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

## 2. 인터넷 사용료 지원

- 인터넷 신규 신청, 일시 정지, 통신사 변경,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.
-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, 학생 1인당 월 17,600원(유해차 단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)으로, KT, SK브로드밴드, LGU+, SK텔레콤, SKB전주방송(구)티브로드, 금강방송, 전북방송, 군산방송에 **1년간 통신비를 대납**합니다.
-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적을 상실(타시·도 전출, 자퇴, 퇴학, 제적, 휴학, 유예, 면제, 이민, 고등학교 졸업)하는 경우에는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통신사 변경은 연1회, 11월 중(11월1일~20일)에만 가능하며 통신사 변경(가입자명, 통신사회선번호 등)시 학교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. 누락 시 지원받지 못하며, 보고된 시점(월)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.
-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.  
(미설치 및 삭제 기간 통신비 미지원)

### ■ 협약통신사(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) 및 지원가능 상품

통신사	전화	2025. 지원 가능 상품
KT	· 080-7979-001(상담, 가입), 100(해지)	· 통신사 문의 (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)
SK브로드밴드	· 1600-5035(상담, 가입), 106(해지)	· 통신사 문의 (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)
LGU+	· 1661-0567(상담), 02-101(상담, 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 (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)
SK텔레콤	· 1600-7675(상담), 1600-2000(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 (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)
SKB전주방송 (구)티브로드	· 1877-7000(상담, 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
전북방송	· 1855-1000(상담, 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
금강방송	· 1544-5400(상담, 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
군산방송	· 063)466-6960(상담, 가입, 해지)	· 통신사 문의

### 3. 협정요금(협약상품) 설명

#### 협정요금(협약상품)이란?

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반요금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·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통신사간 협약 체결된 협약상품으로, 협정요금 가입 이후 발생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으로 청구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함.

☞ 협정요금 가입/해지는 정보화지원 대상자 소속 학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협정요금 가입/해지가 인터넷 서비스(회선)의 가입/해지는 아니므로 졸업, 전출 등으로 협정요금 해지 처리 시 인터넷 서비스(회선)의 해지 처리는 학부모에게 별도 처리토록 안내해야 함(협정요금 해지 후 통신 요금은 학부모에게 청구됨) - 인터넷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함.

### 4.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

[초·중등교육법 제60조의10(비용의 징수)]

-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[초·중등교육법 제67조(벌칙)]

-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